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1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 경, 강석주, 김기덕,
김성준, 박강산, 박승진,
송도호, 아이수루, 오금란,
, 유정희, 이상욱, 이종태,
임규호, 최재란, 한 신
의원(15명)

1. 제안이유

- 2016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체계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일부 동물원·수족관의 보유 생물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부터 제9조).
- 다. 시장이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라. 서울시 및 산하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시민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시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동물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서울시 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동물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정원도시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나.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와 건강·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비용지원 등) 시장은 관할구역 내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종 및 해양보호생물종의 보전·복원 및 관련 조사·연구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홍보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4.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질병관리·검역 지원
5.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안전관리 지.원
6. 종 보전을 위한 종 보전·증식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

제11조(기부금품의 접수) 시 및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증식, 조사·연구, 전시·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 ※ 제10조(비용지원 등)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부서(정원도시국 서울대공원)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동물보호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10조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233,333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나. 전제

- 비용은 2026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6조의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공무원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2,100천원(연평균 2,4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소계(a)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2,100천원(연평균 2,4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소계(a)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420	2,420	2,420	2,420	2,420	12,100

- 서울특별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 12,100천원
 - = 참석수당+업무추진경비
 - = 10,000천원+2,100천원

- 참석수당 = 10,000천원
 - = 수당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200천원×5명×2회×5년

※ 지급인원 : 위원 7명 중 공무원(당연직) 2명은 제외

※ 참석수당 단가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시간 초과 200천원 적용

- 업무추진경비 = 2,100천원
 - = 경비단가×지급인원×연2회×5년
 - = 30천원×7명×2회×5년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